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09,753,569	45,292,607
일반회계	1,310,990,399	39,329,712
특별회계	198,763,170	5,962,895
공기업특별회계	175,023,229	5,250,6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593,104	1,277,7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554,105	1,966,6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6,020	2,006,281
기타특별회계	23,739,941	712,19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272,163	218,1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63,602	133,908
수질개선특별회계	7,689,884	230,69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78,162	74,34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93,575	29,8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2,555	25,2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443,03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